

# 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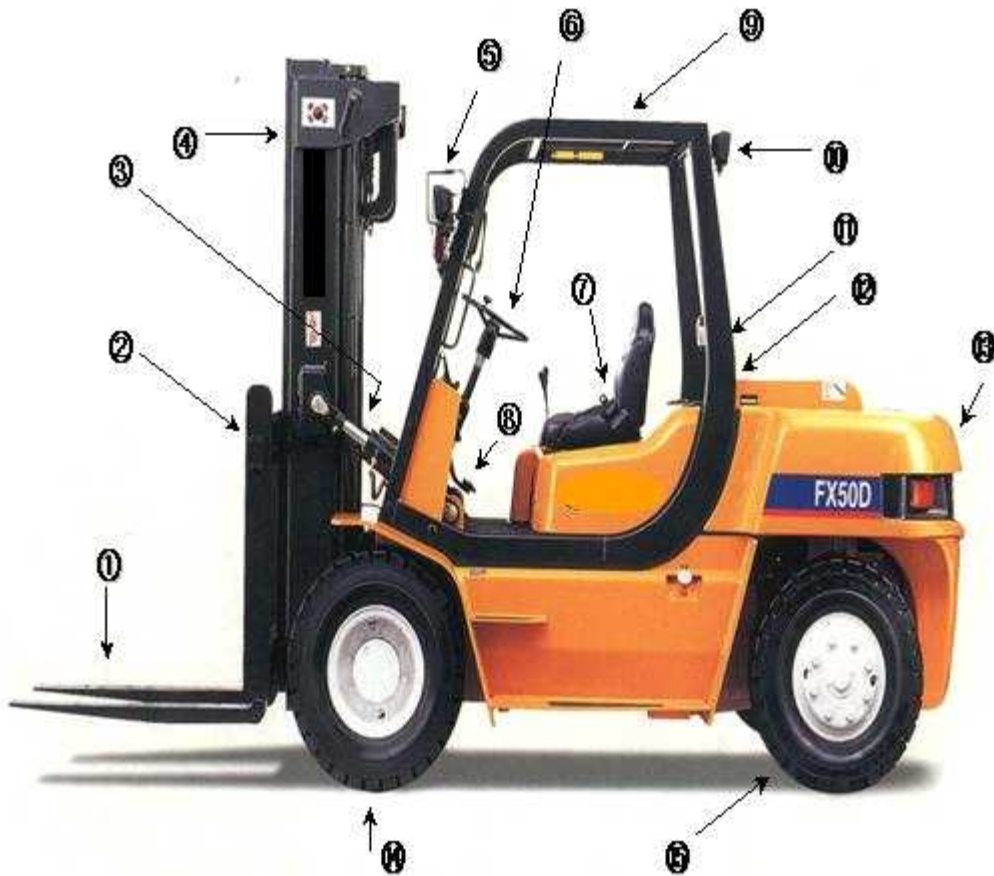
- 지게차 운전작업편 -



## < 지게차 운전작업 사망재해 통계 >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화물 운반작업 중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의 재해 발생으로 매년 평균 3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음.

# 지게차 구조



- |          |          |
|----------|----------|
| ① 포크     | ⑨ 헤드가드   |
| ② 백레스트   | ⑩ 후미등    |
| ③ 틸트 실린더 | ⑪ 방향지시기  |
| ④ 마스트    | ⑫ 후진경보장치 |
| ⑤ 전조등    | ⑬ 카운터웨이트 |
| ⑥ 조향핸들   | ⑭ 전륜     |
| ⑦ 안전벨트   | ⑮ 후륜     |
| ⑧ 제동장치   |          |

#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감독 포인트

\*\*\* 사업장 감독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 감독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 “전조등 및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 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 □ 지게차 운전작업 감독 시 필수확인 산안법령 조항

항 목	주 요 내 용	법·안전보건기 준규칙 조항
1. 사용 시	①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② 지게차 사용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③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⑤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 장소에는 지게차에 전조등 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함 ⑥ 지게차에는 낙하 등에 위험예방을 위해 적절한 헤드 가드와 백레스트를 갖추어야 함 ⑦ 앞서서 운전하는 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함	규칙 제38조 규칙 제98조 규칙 제173조 규칙 제175조 규칙 제179조 규칙 제180조, 제181조 규칙 제183조
2. 기타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특히, 운반용 하역·운반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안전 교육 대상임) ② 지게차를 대여받은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가 아닌 사람 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조치의 적정성 ③ 지게차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함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④ 지게차 미 사용시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 보관해야 함	법 제31조 법 제33조 법 제47조 규칙 제99조

※ 사업장 감독점검 시 “참고자료(25~36페이지)”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것

# 지게차 운전작업 지적·사고사례



좌석안전띠 미설치1



좌석안전띠 미설치2



과다적재로 시야 미확보



지게차 목적외 사용



지게차 포크를 과도하게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하다 전복

# 지게차 운전작업 시 위험포인트 및 안전대책

\*\*\* 아래 내용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법적 이행 사항과 권고사항 등을 행정지도할 때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것임\*\*\*

## □ 위험 포인트

- 운전자 시야불량, 무면허, 운전미숙, 과속에 의한 **충돌위험**
-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 상승상태에서 급선회에 의한 **전도위험**
- 화물 과다 적재, 편하중, 지면요철 등에 의한 화물 **낙하위험**
-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위험**

## □ 안전대책

항 목	세 부 조 치 내 역	비 고
1. 안전통로 확보	① 전용통로 확보(작업공간이 충분할 경우) ② 통로 구분(바닥 면 또는 선을 색채로 표시) ③ 반사경 설치(교차로 등 사각지대)	
2. 방호장치 설치·사용	①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②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 ③ 지게차 주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3. 화물 적재의 안전성 확보	① 운전자 시야 확보(화물 과다 적재금지) ②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주행(급선회) 금지 ③ 팔레트에 화물을 과다적재 후 시야 확보 시까지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주행 금지 ④ 급선회 시 사용하는 핸들에 Knob 부착금지	
4. 지게차 안전 운행	① 지게차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지정·준수 및 표지판 부착 ② 방향지시기 및 후진경보장치 정상 작동	
5. 고소작업 사용금지	①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 운반구는 사용가능	
6. 전담 관리자 지정 등	①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키 관리 ② 승차석 외(포크, 팔레트, 스키드 등) 탑승금지 ③ 무자격자 운전금지 ④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 팔레트 또는 스키드: 화물을 한단위로 받쳐놓은 깔판 받침대(주로 사각형의 플라스틱 재질이거나 목재로 구성)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발생 형태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근로자 준수사항
충돌재해 예방	① 지게차 전용통로 확보 ② 지게차 운행구간별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해당 운행구간에 표지판 부착 ③ 후사경, 룸미러,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음 등 설치 ④ 무자격자 운전금지 등 관리감독 ⑤ 교차로 등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⑥ 지게차 관리전담자 지정 및 키 관리	① 통로구간 운행준수 ②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준수 ③ 지게차 주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④ 지게차 전담자 이외의 자 운전금지 (특히, 무자격자 운전금지) 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라디오·MP3 청취 또는 흡연 금지 ⑥ 운전자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제동 등의 조치
협착재해 예방	① 불안정한 화물 적재 금지 및 시야 확보가 가능토록 적재 ② 급선회 시 사용하는 핸들 Knob 제거 ③ 안전벨트 부착 ④ 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 금지 ⑤ 지게차 작업장소의 지형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 마련 및 교육 실시	①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주행(급선회)금지 ② 화물을 과다 적재 후 시야 확보 시까지 포크를 상승시킨 후 주행 금지 ③ 핸들 Knob 부착 금지 ④ 안전벨트 착용 ⑤ 경사진 노면에서 지게차 이탈할 시 브레이크 제동
낙하재해 예방	① 화물 적재 상태확인 ② 허용하중을 초과한 과대적재 금지 ③ 마모가 심한 타이어 교체	①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금지 ② 경사면 서행운전 및 급선회 금지
추락재해 예방	①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금지 등 관리감독 ②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①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 시에만 고소작업 실시(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② 승차석 이외(포크, 팔레트, 스키드 등)의 탑승금지

# 지게차 운전작업 안전점검표(사업장용)

점검구분: 일일 · 주간 · 월간 · 수시

점검일자:

설비번호		점 검 자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통로구간 운행준수		
2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준수		
3	운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상태		
4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상태		
5	전담자 이외의 자 운전여부		
6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운행(급선회) 여부		
7	화물과다 적재 후 시야 확보 시 까지 포크를 상승시킨 후 전진 운행여부		
8	핸들 knob 부착 여부		
9	안전벨트 착용 상태		
10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여부		
11	고소작업 시 전용운반구 사용상태		
12	승차석 외 탑승여부		
13	운전자의 안전운행 여부 (휴대폰 사용 등)		

# 지게차 운전작업

##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미구획

×



지게차 전용통로

○



전용통로와 보행자통로 확보

○



지게차 전용통로

○



## 화물의 적재상태



과다적재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후진

×



과다적재로 시야 확보를 위해 포크 과다상승 후 전진

×



포크에 매달은 상태에서 전진(무게중심 상승)

×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전진

○

<p>핸들 Knob</p>	<p>전조등, 후미등</p>
	
<p>급선회 사용하는 핸들 Knob 부착</p>	<p>주행 시 전조등, 후미등 점등</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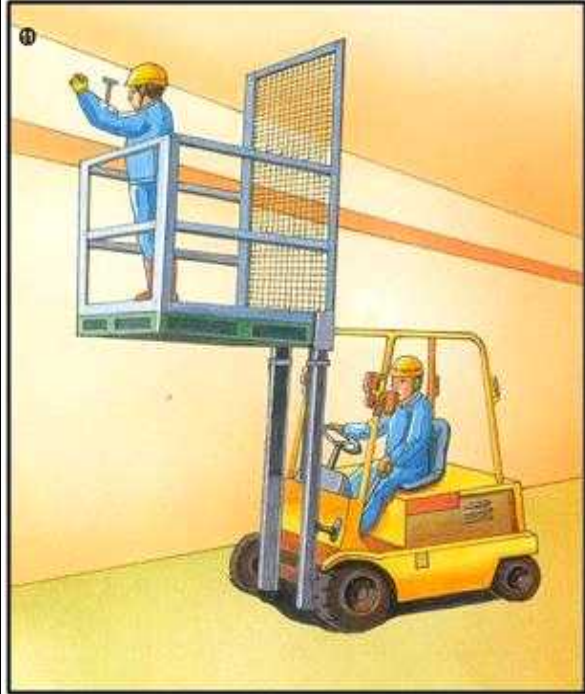
<p>반사경, 제한속도 표지판</p>	<p>안전벨트</p>
	
<p>사각지대 반사경 및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p>	<p>안전벨트 착용 후 운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팔레트 위에서 작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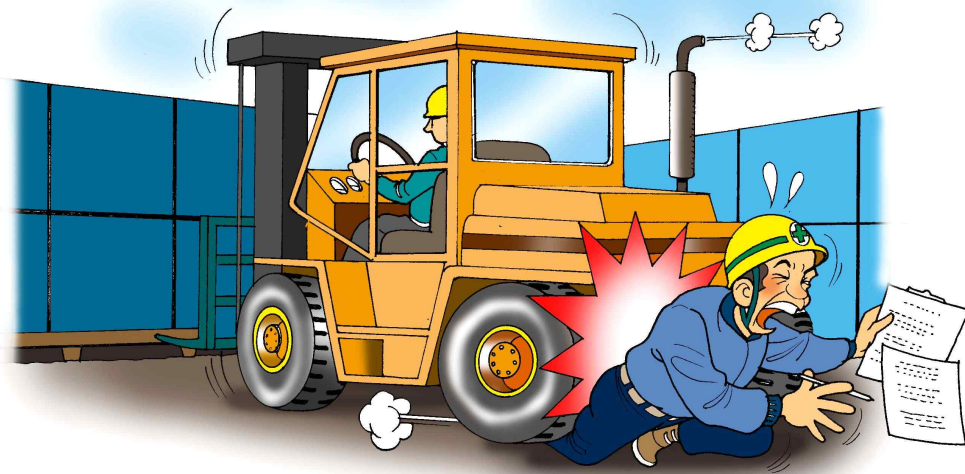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운반구 사용

○

# 중대 재해 사례

- 지게차 운전작업편 -



□ 지게차 운전작업 사망재해 원인분석

발생형태	원 인 분 석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주행 중 근로자와 충돌</li> <li>○ 후진 중 후방시야 확보 불량으로 인한 충돌</li> <li>○ 무자격자에 의해 운전 중 조작미숙으로 인한 충돌</li> <li>○ 과속으로 주행 중 근로자와 충돌</li> <li>○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등 전방시야 미준수로 인한 충돌</li> </ul>
협착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전복에 의한 운전자 협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면을 급선회 또는 횡단 운행 시</li> <li>-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중량물을 매달거나 적재 후 급선회 시</li> </ul> </li> <li>○ 지게차 수리작업 중 안전블록 또는 유압잭(jack)이 무게중심 불균형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탈되면서 협착</li> </ul>
낙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적재방법 불량으로 인한 화물 낙하</li> <li>○ 지면의 요철 등으로 인한 화물 낙하</li> </ul>
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포크를 이용한 고소작업 중 추락</li> <li>○ 승차석 이외의 위치 탑승 중 추락</li> </ul>

## 지게차로 원지롤을 운반하던 중 건물기둥 충돌

### 재해발생 상황

제지공장 창고에서 지게차로 원지롤을 출하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에 원지롤 2개를 적재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창고 내 건물기둥에 지게차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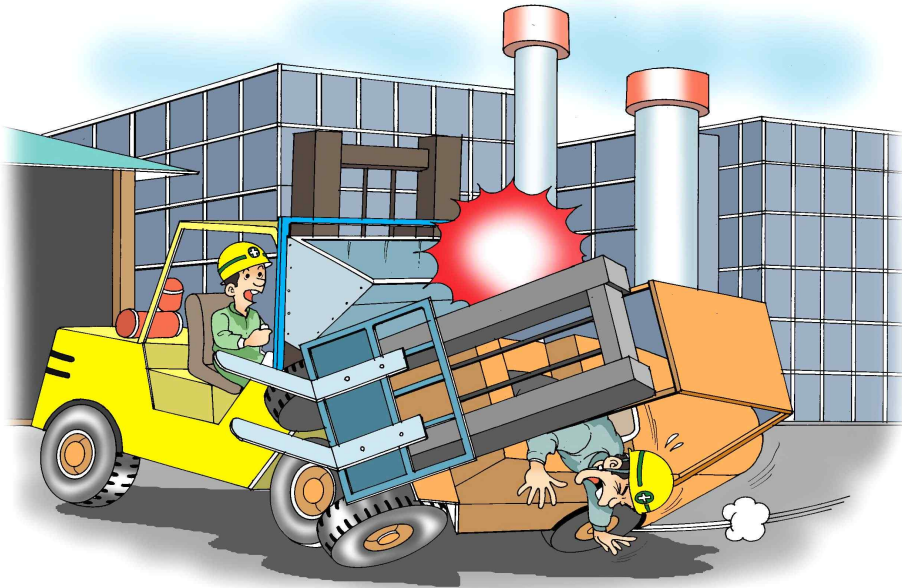
### 예방대책

-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는 높이로 화물적재(원지롤 1개만 적재)
- 지게차 통로구획 및 통로구간만 운행
-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후 운전

##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2대가 서로 충돌

### 재해발생 상황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700kg)을 과다적재(시야 미확보)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들이받힌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예 방 대 책

- 운전자 시야확보가 가능한 높이로 화물적재
-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후 운전
- 운행 시 전조등 점등

##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재해발생 상황

지게차로 곡물사료백을 화물차에서 하역하여 컨테이너에 실는 작업 중 작업물량을 파악하던 재해자가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 지게차 대형 후사경 및 룸밀러 부착
- 후진 시 후미등 점등, 후진경보장치 작동



##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

### 재해발생 상황

옥외 출하 야적장에서 동료작업자는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하고 재해자는 야적장에 운반된 제품을 비닐로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포크에 화물을 과다적재하고 전진 운행하다 재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예 방 대 책

-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한 높이로 화물 적재
- 운행 시 전조등 점등

## 지게차 오조작으로 인한 협착

### 재해발생 상황

제지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파지를 치우는 작업 중 4m정도 떨어진 원지를 감는 릴에서 파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게차를 정차시킨 후 기어를 후진방향으로 놓고 내려 파지를 모으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여 재해자가 지게차와 릴설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금지
- 운전위치 이탈 시의 브레이크 제동

## 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로 인한 협착

### 재해발생 상황

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생산제품을 화물트럭에 상차한 후 제품 고정작업을 하던 중 5m 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운전자가 트럭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금지
- 운전위치 이탈 시의 브레이크 제동
-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 경사면을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 전복

### 재해발생 상황

유통센터에서 지게차에 화물을 싣고 경사면을 후진으로 내려오던 운전자가 운전미속으로 인해 진입로 벽면에 충돌한 후 전복되어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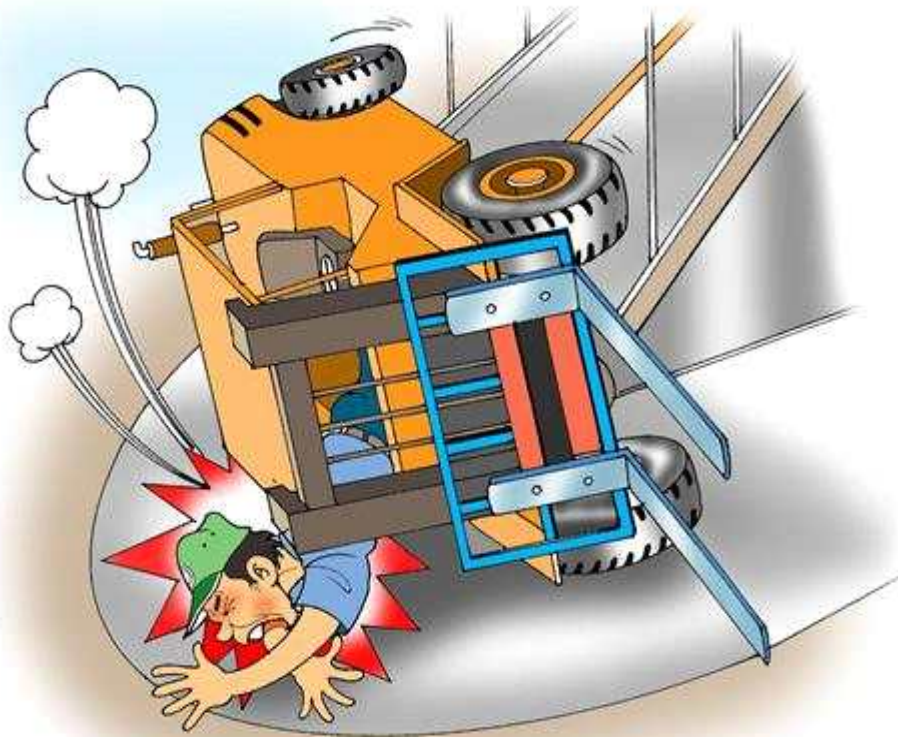
### 예방대책

- 지게차 운전미속자 운전금지
-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후 운전
- 지게차 통로구획 및 통로구간만 운행

## 경사면에서 지게차 급선회로 인한 전복

### 재해발생 상황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지게차로 경사면을 과속으로 내려 오다가 급선회하는 순간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헤드 가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 지게차 급선회 금지
-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후 운전

## 전선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전복

### 재해발생 상황

제품 야적장에서 전선관(95kg×8개)을 지게차 포크에 걸어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키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보조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전복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예 방 대 책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금지
- 지게차 관리전담자 지정 및 키관리 철저
-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후 운전

## 화물 과다적재 후 이동하던 중 화물 낙하

### 재해발생 상황

지게차에 화물을 과다적재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화물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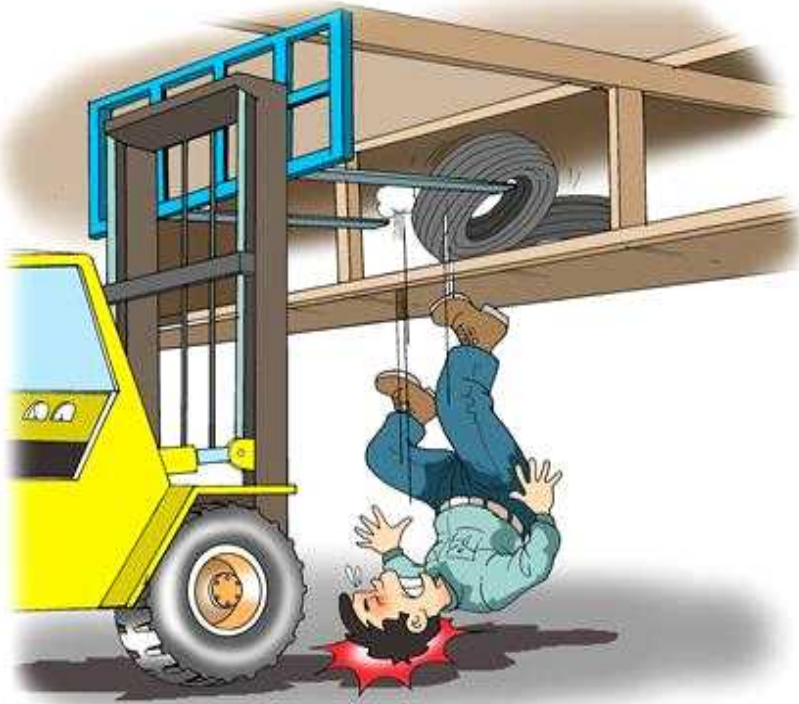
### 예 방 대 책

-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금지
- 화물의 적재상태 확인

##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

### 재해발생 상황

지게차로 전선케이블을 2층 창고에 적재하기 위해 재해자가 상승시킨 지게차 포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예 방 대 책

-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운반구 사용
- 승차석 외 탑승금지
- 안전모 착용



## 지게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

법 령	주 요 내 용
<p>○ 법 제14조(관리감독자)</p>	<p>○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p>
<p>영 제10조 &lt;별표 2 제13호&gt;</p>	<p>○ 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킬 때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기계의 안전·보건점검,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 특별안전교육 실시토록 하여야 함</li> </ul>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lt;안전보건기준규칙 별표 3&gt;</p>	<p>○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바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등</p>
<p>○ 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p> <p>&lt;규칙 제33조 및 별표 8, 8의 2 라목 제13호&gt;</p>	<p>○ 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킬 때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리 기계 점검, 작업순서·방법, 안전운전방법, 화물취급 및 작업신호 등에 대하여 2~16시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li> </ul>
<p>○ 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p> <p>&lt;영 제27조 및 별표 7, 규칙 제46조제1항&gt; ※ '13.3.1. 시행</p>	<p>○ 지게차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헤드가드, 백레스트 부착)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p> <p>○ 지게차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영 제27조제2항, 별표 8 및 시행규칙 제50조</p>	<p>○ 지게차를 대여받은 자가 자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자격을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 작업내용·지휘계통·연락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함</li> </ul>

법 령		주 요 내 용
<p>○ 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p> <p>&lt;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gt;</p>		<p>○ 사업주는 지게차 이용 작업의 경우 지게차운전 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는 제외)</p> <p>※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p> <p>※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시도지사가 발급)</p>
<p>○ 법 제23조(안전조치) 제1항제1호</p>		<p>○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산 업 안 전 보 건 기 준 에 관 한 규 칙</p>	<p>제20조(출입의 금지 등)</p>	<p>○ 사업주는 지게차의 포크나 포크에 들려 있는 화물의 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p>
	<p>제36조(사용의 제한)</p>	<p>○ 사업주는 지게차에 방호조치(헤드 가드, 백레스트 부착)를 하지 아니 하고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됨</p> <p>※ 법 제33조는 양도·대여자 등에 적용</p>
	<p>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 4</p>	<p>○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p> <p>-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p> <p>*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p>
	<p>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p>	<p>○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p> <p>-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p>

법 령		주 요 내 용
○ 법 제23조(안전조치) 제1항제1호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 업 안 전 보 건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제40조(신호)	○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제86조(탑승의 제한)	○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 - 다만, 추락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함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사업주는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조치를 하여야 함  * ①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한 경우 제외)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령		주 요 내 용
○ 법 제23조(안전조치) 제1항제1호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 업 안 전 보 건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제173조(화물적재시의 조치)	○ 사업주는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제174조(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등의 이송)	○ 사업주는 지게차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게차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사업주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사업주는 지게차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①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법 령		주 요 내 용
○ 법 제23조(안전조치) 제1항제1호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 업 안 전 보 건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	○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제180조(헤드가드)	○ 사업주는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제181조(백레스트)	○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제182조(팔레트 등)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  * ①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 지게차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령」 상의 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p><b>제2조(정의 등)</b>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2조(건설기계의 범위)</b></p> <p>「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u>건설기계</u>는 <u>별표 1</u>과 같다.</p>	
<p><b>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b> ① <u>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u>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u>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p>		<p><b>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b>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u></p> <p>2. <u>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p> <p>4. <u>증명사진 2매</u></p> <p>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p> <p>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p>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a href="#">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a>하여야 한다.</p> <p><b>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b> ① 법 제26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덤프트럭</li> <li>2. 아스팔트살포기</li> <li>3. 노상안정기</li> <li>4. 콘크리트믹서트럭</li> <li>5. 콘크리트펌프</li> <li>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li> <li>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li> </ol> <p>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u>3. 3톤 미만의 지게차</u>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 공기압축기. 다만,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u></p> <p>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u>별표 21</u>과 같다.</p> <p>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췌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 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일 것</li> <li>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퍼센트 이상일 것</li> <li>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li> </ol>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자
2. 한쪽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 잃은 자

④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별표 1] <개정 2010.5.27>

건설기계의 범위(시행령 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b>4. 지게차</b>	<b>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통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b>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쇠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21] <개정 2009.4.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시행규칙 제75조관련)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4.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굴삭기
5. 로더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8. 기중기	기중기와 향타 및 향발기
9.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10. 롤러	롤러
<b>11. 지게차</b>	<b>지게차</b>
<b>12. 3톤 미만의 지게차</b>	<b>3톤 미만의 지게차</b>
13.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4.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베틡칭플랜트 및 쇄석기
15.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및 천공기(트럭적재식 천공기는 제외한다)
16. 소형 공기압축기	소형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 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7. 준설선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18.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9.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비 고

-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는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한다.

# (지게차 작업) 감독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법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법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정기교육</li> <li>- 특별교육[운반용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보유 여부(법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톤 이상: 지게차 운전 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li> <li>※ 전동식(баттери)으로 솔리드타이어(통고무타이어)를 부착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안전보건규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준수 여부(제86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락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2항)</li> <li>-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지 여부(제98조제3항)</li> </ul> </li> <li>-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li> <li>·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여부</li> <li>* ①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한 경우 제외)</li> </ul> </li> <li>- 지게차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준수 여부(제1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지게차에 화물적재 시 다음 사항* 준수 여부(제1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li> </ul> </li> <li>-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사용여부(제1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제1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적합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를 갖추었는지 여부(제180조 및 제181조)</li> <li>- 하역운반작업 시 적정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 여부(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화물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li> </ul> </li> <li>- 좌승식 지게차에 근로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착용토록 하였는지 여부(제183조제1항)</li> <li>-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여부(제183조제2항)</li> </ul> </td> <td style="width: 20%;"></td> </tr> </table>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준수 여부(제86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락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2항)</li> <li>-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지 여부(제98조제3항)</li> </ul> </li> <li>-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li> <li>·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여부</li> <li>* ①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한 경우 제외)</li> </ul> </li> <li>- 지게차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준수 여부(제1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지게차에 화물적재 시 다음 사항* 준수 여부(제1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li> </ul> </li> <li>-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사용여부(제1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제1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적합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를 갖추었는지 여부(제180조 및 제181조)</li> <li>- 하역운반작업 시 적정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 여부(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화물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li> </ul> </li> <li>- 좌승식 지게차에 근로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착용토록 하였는지 여부(제183조제1항)</li> <li>-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여부(제183조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준수 여부(제86조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락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제98조제2항)</li> <li>-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지 여부(제98조제3항)</li> </ul> </li> <li>-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는지 여부</li> <li>·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여부</li> <li>* ①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한 경우 제외)</li> </ul> </li> <li>- 지게차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준수 여부(제1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지게차에 화물적재 시 다음 사항* 준수 여부(제1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li> </ul> </li> <li>-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외의 사용여부(제1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제1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는 적용 제외</li> </ul> </li> <li>- 적합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를 갖추었는지 여부(제180조 및 제181조)</li> <li>- 하역운반작업 시 적정한*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 여부(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화물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②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li> </ul> </li> <li>- 좌승식 지게차에 근로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착용토록 하였는지 여부(제183조제1항)</li> <li>-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여부(제183조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를 대여받은 후 자기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면서 자격보유 여부 등 조치의 적정성 여부(법 제33조제2항)</li> </ul>			